

부 의 요 구 서

요구일자 : 2004. 5. 31

제 출 자 : 이종환 의원외 6인

□제 목 : 2004년도특별회계서울특별시종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 부의요구

□근 거 :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

□제출처 : 제1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□사 유

- 주차장의 건립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차장 건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, 현재 인사동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
-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·외의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함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장